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 제안이유

책자로 인쇄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배부하던 회의록을 인터넷 게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시디-롬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회의록 전자화 시행에 따른 관련 근거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를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제2항의”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나. 회의록 인쇄 발간을 시디-롬으로 제작 변경함에 따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시디-롬으로 제작하여”로 개정(안 제2조제2호)
- 다. 전자 임시 회의록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를 “전자 임시 회의록이라 함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원고를 전자화 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로 개정(안 제2조제3호)
- 라. “전자 회의록이라 함은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말한다.”를 신설(안 제2조제4호)

- 마.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수정(안 제3조제1항)
- 바. 제4조 제명 중 “(임시회의록)”을 “(전자 임시 회의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였으며, 동조 제2항 중 “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을 “전자 임시 회의록에는 「회의규칙」”으로 하여 제1항으로, 동조 제3항 중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를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 할 수 있다”를 “전자 임시 회의록의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로 하여 제2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임시회의록 발간”을 “전자 임시 회의록을 게재”로 하여 제3항으로 하였음(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사. 제7조 및 제13조가 신설됨에 따라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제2항 중 “보존 회의록”을 “보존 회의록, 전자 회의록”으로, “임시회의록”을 “전자 임시 회의록”으로 하고, 동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7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 (전자회의록 공표 등)①전자 임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②전자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 임시 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 제출) 본회의(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시 제3조제2항의 자료 등, 서면 자료는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 회의록 담당에게 제출하되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록된 파일 등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을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동조 제2호 중 “기재·발간하여”를 “기재·시디-롬으로 제작하여”로, 동조 제3호 중 “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를 “전자 임시 회의록이라 함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화 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동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4 “전자회의록”이라 함은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중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명 중 “(임시회의록)”을 “(전자 임시 회의록)”으로, 동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제47조제1항”을 “전자 임시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를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를 “전자 임시 회의록의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임시회의록을 발간”을 “전자 임시 회의록을 게재”로, “제1항, 2항 및 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 제8조를 제9조로 , 제9조 제2항 중 “보존 회의록”을 “보존 회의록, 전자 회의록”으로, “임시회의록”을 “전자 임시 회의록”으로 하고, 동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14조로 하며 제7조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자 회의록의 공표 등)**①전자 임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전자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 임시 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본회의(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시 제3조 제2항의 자료 등 서면자료는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 회의록 담당에게 제출하되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록된 파일 등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p>② (생략)</p> <p><b>제4조(임시회의록)</b> ①본회의 회의록은 미리 임시회의록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발간하여 배부한다.</p> <p>②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7조2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정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또는 발언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한다.</p> <p>③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p> <p>④위원회의 임시회의록을 발간할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4조(전자 임시 회의록) (삭 제)</b></p> <p>①전자 임시 회의록에는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 ----- ----- ----- -----.</p> <p>②제①항의 조치를 위하여----- -----전자 임시 회의록의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p> <p>③위원회의 전자 임시 회의록을 게재----- 제1항제2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b>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생략)</b></p> <p><b>제8조(참고문서) (생략)</b></p> <p><b>제9조(자구의 정정)① (생략)</b></p> <p>②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p>	<p><b>제7조(전자 회의록 공표 등) ①</b>전자 임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②전자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 임시 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p> <p><b>제8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b> (현행 제7조와 같음)</p> <p><b>제9조(참고문서) (현행 제8조와 같음)</b></p> <p><b>제10조(자구의 정정)① (현행 제9조와 같음)</b></p> <p>②-----</p>

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 (생략)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제11조(녹음) (생략)

(신 설)

제12조(내규 등 제정) (생략)

-----  
보존 회의록, 전자 회의록에----.--, 전자 임시 회의록-----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녹음)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자료 제출) 본회의(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시 제3조제2항의 자료 등 서면 자료는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 회의록 담당에게 제출하되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록된 파일 등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내규 등 제정) (현행 제12조와 같음)